

19세기 중반 남부베트남의 地主像*

— 딘 뜨엥(Dinh Tuong 定祥) 성 빈 까익(Binh Cach 平格) 촌의
쩐(Tran 陳) 씨 집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

崔 秉 旭(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

- | | |
|-----------|--------------------|
| 머리말 | Ⅲ. 소작인과의 관계 |
| I. 이주와 정착 | Ⅳ. 둔전과 촌락 건설(屯田立邑) |
| Ⅱ. 토지 집적 | 맺음말 |

머리말

혁명 시기에 공산주의 운동에 헌신하다가 독립 이후 역사학자로 변신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의 찐 반 저우(Tran Van Giau) 교수는 전통시대 메콩 유역의 지주-소작 관계가 “소작인이 아니라, 지주가 아쉬울 게 많았던 관계”¹⁾라고 압축해 설명하고 있다. 반봉건 투쟁 과정 속에서 지주 타도와 토지 분배를 주장해 왔던 맹렬 공산주의 혁명가가 메콩 유역 역사 문화 연구에 오래 천착한 끝에 내린 확신있는 결론은, 전통시대 적어도 이 지역의 지주-소작 관계는 지주가 소작인을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형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시대와 식민지 시대를 단절된 별개의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기존에 역사학계에서 관행적으로 애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1-050-B00016)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Tran Van Giau, “Nguoi Luc Tinh (六省 사람들),” *Xua va Nay* No. 44B, 1997, p.4.

기되어 왔듯 전통시대 지주를 비롯한 유산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프랑스에 협조했고 그 보상으로 이들은 남부의 대토지 소유자로 존재하면서 소작인들을 착취했으며, 그래서 식민시대의 지주 소작 관계를 전통 시대의 그것으로부터 이어진 당연한 착취-피착취 관계였다고 단정해 버리는 태도의²⁾ 검토를 요구하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썬 반 저우의 주장은 남부 연구의 경험이 축적된 데서 오는 직관이나 단정의 성격이 짙을 뿐 근거 있는 자료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그는 구전되는 노래나 풍속의 편린, 지리적 조건, 관행적 인간관계 등만을 언급할 뿐, 기록된 사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 문제나 지주-소작 관계에 관한 연구는 식민지 정권이 남긴 다양한 자료 및 비교적 가까운 기억 등에 의존해서 주로 식민지 시대에 한정되어 왔다. 일찍이 이 방면에 중요한 연구를 선보인 응오 빈 롱(Ngo Vinh Long)의 *Before the Revolution*(1973)이 그러하고,³⁾ 비교적 최근의 연구서인 뻬에르 브로셰우(Pierre Brocheux)의 *The Mekong*(1995) 역시 프랑스 식민시대 메콩의 농촌상을 다양한 프랑스 자료를 통해 소묘하고 있을 뿐이다.⁴⁾ 극히 적은 부분이기 는 하지만 전통 시대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추측 내지는 단정으로 채워질 뿐이지 근거가 제시되지 는 못한다. 자료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자료 해독의 어려움이 이런 현상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이다. 베트남 본국 학자들 역시 전통 시대의 농촌 문제를 알려주는 각종의 한자 자료에 접근하기가 힘든 터이라 몇몇 주요 자료의 현대어 번역본이라든가 프랑스 식민 관료들이 조사해 놓은 자료들만을 주로 이용해 오고 있는 실

2) 1969년 출판된 이후에 증판을 거듭하며 베트남 연구자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Milton Osborne의 *The French Presence in Cochinchina and Cambod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는 전통시대 지주층과 식민지시대 대지주들을 연속적인 존재로 이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저술이다.

3) Ngo Vinh Long, *Before the Revolu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3.

4) Pierre Brocheux, *The Mekong Delta: Ecology, Economy, and Revolution, 1860-1960*,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Wisconsin, 1995.

정이다.

필자는 남부베트남에서 1830년대에 있었던 토지 측량과 그에 따른 토지 사유화의 발전, 그리고 남부지주와 조정 사이의 공식적 관계의 강화 등의 문제를 각종의 1차 자료를 사용해서 검토한 바 있다.⁵⁾ 본 연구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선행 작업이 그 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필자의 관심은 중앙 조정의 정책과 그에 따른 남부 사회의 변화 모습이었다. 때문에 남부에 살고 있던 농민들 개개인의 모습은 아직껏 ‘사회’라고 하는 표면 저 아랫쪽에 희미하게만 드러나 보일 뿐이었다. 만일 그 희미한 것이 더 명확하게 살아난다면 당시의 사회상은 더욱 분명히 조망될 수 있었지만 연구를 더 진행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컸다. 그러나 연구 주제의 한계도 명확히 지켜야 한다는 것과 필요한 자료가 아직 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도 논의를 더 진행시킬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였다.

최근 들어 메콩 유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 사이에는 한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원로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현대적 연구방법론을 구사하는 소장 학자들이 논문을 작성하는 협업의 형태로 전통시대 메콩 유역의 농민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치밀하고 실증적이며 미시적인 연구들이 출현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응우옌 푹 응이엵(Nguyen Phuc Nghiep)의 “Tinh Hinh Tu Huu Ruong Dat o Tien Giang Nua Sau The Ky XIV”(19세기 후반 띠엔 장에서의 토지 사유 현황, 2001)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메콩 동편의 곡창지대인 미 토(My Tho) 부근의 지주의 종류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토지 소유 규모, 토지집적 방식 등에 따라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⁶⁾ 물론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아직도 주된 논의는

5) Choi Byung Wook, “Southern Vietnam under the Reign of Minh Mang (1820-1841): central policies and local response,” SEAP, Cornell University, Ithaca, 2004, Chapter Six “Land Measurement and the protection of private land ownership.”

6) Nguyen Phuc Nghiep, “Tinh Hinh Tu Huu Ruong Dat o Tien Giang Nua Sau The Ky XIV(19세기 후반 띠엔 장에서의 토지 사유 현황),” *Nghien Cuu Lich Su* 5

프랑스 지배 초기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그가 분석한 지주들 중에는 전통 시대, 그러니까 19세기 전반이나 중반 남부사회와의 연계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서 전통시대의 농촌상을 엿보는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자로 하여금 추가로 자료를 모아 본 연구를 착수하게 한 자극제가 되어 주었다.

19세기 중반 남부베트남의 지주에 관해 얘기하면서 스콧(James Scott)의 ‘도덕경제(moral economy)’⁷⁾와 팝킨(Samuel Popkin)의 ‘합리적 농민(rational peasant)’⁸⁾의 대립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이론의 실질적 근거로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동시대 베트남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스콧이 말하는, 촌락 내 농민(주로 소작인)은 최소한의 생존수준을 기대하며 지주는 그것을 보장했다는 요지의 전통시대 도덕경제는 팝킨의 지적대로 너무 “이상화된(idealized 또는 romanticized)“ 사회 형태였음은 분명하다. 스콧과 비슷한 입장에 선 응오 빈 룡이 말한 대로 전통시대 지주들이나 촌락 지도자들이 유교적 교육을 받은 자들이라 해서 그들이 농민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에 집착할 것이라는 믿음은⁹⁾ 너무 낭만적이다. 지배자로서의 도덕성은 유교에서만 가르치는 덕목은 아니며 그런 덕목이 항상 당사자의 현실적 이해 관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도 흔하다. 필자는 지주-소작 관계란 양자 공히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제반 모색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데서 팝킨의 ‘합리적 농민’ 이론에 더 호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팝킨이 ‘도덕경제’를 반박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취약점은 스콧이 “이상화한” 전통시대 남부베트남 촌락 내 지주-소작 관계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전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스콧의 “이

(318), 2001.

7) James C Scott,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76.

8) Samuel L Popkin, *The Rational Peasant - The Political Economy of Rural Society in Vietna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y, 1979.

9) Ngo Vinh Long, 앞의 책, p.68.

상화된” 도덕경제 사회도 역사적 근거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식민시대 지주-소작 관계는 전식민시대로부터 계속되어 온 것 즉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는 푼킨은 식민시대의 지주-소작 관계로써 전통시대의 농민상을 역으로 ‘유추’하고, 단절을 주장하는 스콧은 식민시대의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전통시대의 이상향적 지주-소작 관계를 ‘창조’해 냈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

필자는 역사를 다루는 것이 본업이 아닌 스콧이나 푼킨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탓 할 생각은 전혀 없다. 또 그들은 연구 대상이 식민지시대 농민(반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전통시대의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지적은 그들에게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두 필자 공히 식민지 시대의 반란 원인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할 때 전식민지(pre-colonial 또는 pre-capital) 시대의 성격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결정적인 전제가 된다는 데 있다. 단절의 시각을 갖고 있는 스콧의 입장에 선다면 전통시대의 도덕경제 없이는 식민시대 농민(지주 포함)들이 생각하는 도덕경제의 당위성은 있을 수 없으며, 식민시대의 긴장된 지주-소작 관계는 결국 전통시대 관계의 연속일 뿐이라는 푼킨의 입장에 선다면 전통시대의 농민(지주 포함)이 이기적이고 타산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사회과학적 이론이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의 증명을 위해 역사적 사실이 창조된 기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문제는 두 저술이 필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베트남학 연구자들 또는 동남아학 연구자들 사이에 끼쳐 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는 하다. 바로 그런 영향력 때문에 최근에는 베트남의 유일한 공식 역사학 잡지인 *Nghien Cuu Lich Su*(역사연구)에서조차 이 두 논쟁을 길게 소개하게까지 되었지만 논쟁을 소개하는 베트남 학자 역시 왜 베트남 역사 속의 농민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합리적’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¹⁰⁾

10) Nguyen Van Su, “Nghien Cuu Ruong Dat va Nong Dan Viet Nam, Mot So Cach Tiep Can Ly Thuyet (베트남의 토지와 농민에 관한 연구 — 이론 접근 방법 및 가

그러나 두 이론이 모두 역사 연구자들에게 농민 문제를 보는 매우 유용한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베트남의 역사를 놓고, 어느 편이 더 사실에 가깝겠는가를 생각할 때 필자는 폼킨의 주장을 지지하지만 지주-소작 관계가 폼킨이 주장대로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합리적’ 상호 관계 속에서도 전통시대(19세기) 남부의 지주-소작 관계는 우호적이었든가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본인의 시각은 폼킨과 다르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스콧의 편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단지 본고에서는 이 우호적인 관계를 스콧이 주장한 바 근거 빈약한 “이상화”가 아니라 실증적 사례에 근거한 결론을 통해 도출할 것이다.

농민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필자는 소작인 내지는 소농보다는 지주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지주, 소작, 소농 공히 이들에 대한 기록은 전통 시대의 『실록』 같은 공식 문서에서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촌락 단위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자취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은 지주들뿐이다. 스스로는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않은(실사 남겼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들의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소작인 내지는 소농을 희망없이 추적하기보다 필자는 자신의 행적을 상당 부분 드러낸 지주를 선택해 전통시대 메콩 유역의 한 농민상을 그려내 보고자 한다. 17세기부터 베트남인들이 대량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남부에서 지주 형성의 역사는 대단히 짧다. 19세기에 남부지주 대부분은 가난한 농민이 중부로부터 이주해 와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토지를 집적해 온 집안의 역사를 갖고 있다. 관직 등 권력을 매개로 해서 토지를 보유하거나 집적한 경우는 극히 적다. 그래서 이들의 성장 과정에는 농민으로서의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지주가 되어서 그들은 상대하는 소작에 대한 기록을 비교적 상세하게 남겨두었다. 그래서 지주에 대한 연구는 지주 그 자체가 아니라 지주, 소농, 소작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논문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에서는 중부로부터의 이

주 농민이 메콩 유역이라는 신세계에 어떻게 정착하는지를 살필 것이며 그 다음 장에서는 남부의 농민이 토지를 집적하며 지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한 지주의 인생 말기 재산 분배를 위해 작성한 유언장을 통해서 역추적해 보겠다. 여기에는 그가 활발하게 토지를 집적할 당시에 만들어진 토지거래 내역서라든가 촌락의 地簿와 같은 자료들도 참고된다. III장에서는 소작인과의 관계가 소작계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1850년대 활발했던 조정의 ‘屯田立邑’ 정책을 살펴본다. 둔전은 군대 농장으로서 군대 즉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지만 필자는 이 시기 남부의 지주들이 둔전 설치 및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했음을 주목한다.

I. 이주와 정착

토지의 인구 부양 능력이 떨어지는 빈 딘(Binh Dinh 平定)이나 푸옌(Phu Yen 富安) 등 중부 지역으로부터 17-18세기 가난한 베트남 농민들이 남부의 신세계로 이주했다. 토지에 굶주린 가난한 베트남 농민들에게 남부는 낙원이었다. 남부의 입구가 되는 비엔 호아(Bien Hoa 邊和)로부터 서쪽으로 동나이(Dong Nai) 강, 사이공 강, 밤코(Vam Co) 강, 메콩 강 등 굽적굽적한 강들의 지류를 따라 울창한 정글 안으로 미개간지는 무진장 널려 있었다. 가족 단위로 또는 몇몇 가족이 모여 육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온 이주민들은 이곳으로부터 배를 이용해 이동하다가 적당한 곳을 선택해 자리를 틀고는 나무를 베어내고 논밭을 만들기 시작했다.

일찍이 남부의 메콩 東岸의 고꽁(Go Cong) 지역 개간 역사에 대한 탁월한 연구서를 남긴 비엣 꾸크(Viet Cuc)은 이주민들의 토지 개간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소묘한 바 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여 정글을 개척하여 논을 만든다. 매 가정의 개별적으로 한 구역을 차지하고서는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고 수풀을 치워내어 논을 만들어 내는데 [...] 호랑이, 악어, 독사들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정글 속이다. 그러나 정글 안으로 일하러 들어가길 꺼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¹¹⁾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빈 응우옌 록(Binh Nguyen Loc)은 자신의 단편 소설에서(한국어판 번역에는 필자의 이름을 ‘빈 구옌 로크’로 표기) 한 이주민의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내는데 그들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 하다. 록은 그가 활동하던 당시도 아직 개간이 완성되지 않은 까 마우(Ca Mau) 반도 내 우 민(U Minh) 지역으로 이주한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의 사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남부베트남에서 거의 공통적인 것이어서 초기 개척 시기 생활상을 짐작케 하는 단서가 된다. 주인공인 소녀와 부모, 할아버지로 이루어진 이 이주 가정의 생활상은 주로 소녀의 관찰과 그녀의 할아버지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집 바깥에는 기가 질릴 만큼의 고요가 깔려 있다. 그 고요는 집안에서도 매일반이었다. 가족이 한데 모여서 즐겁게 얘기를 주고 받는 일이 좀체로 없다. 이 고장으로 옮겨오고부터는 모두들 생판 달라졌다. 어쩌다 보면 종일토록 입을 다물고 있는 날도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루 꼬박 일을 하고 묵묵히 식사가 끝나면 잠을 잔다. [...] “[오년 전] 옛 동네를 나와서 우린 굉장히 떠돌아 다녔단다. [...] 논이 없으면 굶어 죽는 길밖엔 없거든. 며칠이 안가서 끼니거리는 떨어지고 물도 다 먹어 버렸어. 그때 우린 여기에 와 닿았다. [...] 아무리 조막만하고 메마른 논이라도 어쨌든 갈아 보기로 하면 빛이고 생산되겠지...”¹²⁾

절망적인 것 같아 보이는 속에서도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전에 살던 곳을 떠나 얼마 되지 않아 식량이 다 떨어졌어도 그들은 새로운 땅

11) Viet Cuc, *Go Cong Canh Cu Nguoi Xua*(옛적의 고 쫑과 인물들) vol. 2, Saigon, 1969, pp.35-36.

12) 빈 구옌 로크, 「메콩 三角洲 막바지」, 이종구 번역, 『세계문화단편선』(월간중앙 8월호 부록), 중앙일보사, 서울, 1971, pp.151-153.

에 정착해서 오년 재를 아무도 굶어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남부에서도 이곳 우 민은 개간의 여건이 가장 안 좋은 곳으로 통하는데도 말이다.¹³⁾ 개간 기간 동안 농사 수확은 변변치 못해도 아버지는 농사일 틈틈이 몰고기를 잡아 말려 장에 내다 팔아 식량을 구해와 먹고 살고,¹⁴⁾ 지나가는 또 다른 이주민 가족이 형편을 묻자 아이는 “그전에는 [이전 마을에서] 네 정보밖에 없었는데 [...] 지금은 열 정보나 돼요”¹⁵⁾라며 자랑한다. 오 년 만에 개척한 토지가 이전에 갖고 있던 토지의 배가 넘는 열 ‘정보’¹⁶⁾라니 앞으로 아이들이 더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그리고 이 소녀에게 장가드는 젊은이의 노동력이 더해지면¹⁷⁾ 개간될 토지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국가의 개입은 거의 없었다. 레 꾸이 돈(Le Quy Don 黎實惇, 1725-1784)은 그의 저서 『撫邊雜錄』에서 응우옌 왕국(16세기-18세기)이 남부 메콩 지역을 경영하기 시작하며 중부 “廣義와 歸仁의 재산 있는 자들

13) Terry A Rambo, *A Comparison of Peasant Social Systems of Northern and Southern Viet-Nam: A Study of Ecological Adaptation, Social Succession, and Cultural Evolution*, Center for Vietnamese Studie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1973, p.57.

14) 빈 구엔 로크, 앞의 글, p.154.

15) 앞의 글, p.148.

16) 여기서 ‘정보’란 영어의 헥타아르를 번역한 듯 하다. 이 소설의 원본은 찾을 길 없고, 한국의 번역자는 이 소설의 영어 번역본을 다시 번역했음이 틀림없는데(번역자는 영문학자임), 영어번역본에서는 베트남에서 사용되고 있던 토지 측량 단위인 머우(mau 畝)나 까오(cao 篙)를 헥타아르로 산정하였을 것이고 다시 한국말 번역에서 정보 단위를 쓴 것이다. 1헥타아르는 약 3,000평이고 1정보 또한 3,000평이니 헥타아르를 정보로 번역한 것은 타당하다. 남부에서 1머우는 약 5,000평방 미터이고 까오는 머우의 1/10이다. 메콩에서 일반적으로 2-3머우를 가지면 자립적인 소농이라고 할 수 있고 한 핵가족 노동으로 최대 4-5머우를 경작할 수 있다. 그런데 소녀가 주장하듯 이전 살던 마을에서 4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이미 12,000평 즉 약 10머우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마련한 토지가 10정보라면 20머우가 넘는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소설 속에서 나오는 토지의 절대 수치는 믿을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한다. 단지 개간에 의한 토지 증가의 비율 정도는 주목할 만하다 할 것이다.

17) 19세기까지 남부에서는 처거제(妻居制, uxorilocality)가 널리 퍼져 있었다. 유인선, 「베트남인의 南進과 南部文化의 形成」, 『東方學志』 105, p.376.

(有物力者)”을 모집해 남부로 보내 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글을 개척하여 평지로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이 기술은 의심의 여지가 많다. 자기 고장에서 먹고살기 넉넉한 자들이 수백 킬로, 심지어 천 킬로가 넘는 먼 지역으로, 온갖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남쪽의 변방을 개척하러 이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수는 극히 소수였으리라 생각된다. “有物力者” 운운하는 기술은 정복자로서 내려와¹⁹⁾ 응우옌 왕국의 수도였던 푸 쑤언(Phu Xuan 富春) 근처에만 머무르며 이 책을 집필했던 레 꾸이 돈의 착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작 남부 응우옌 씨를 잇는 응우옌 왕조에 의해 씌어진 『大南寔錄前編』이나 남부인 쩌 화이 득(Trinh Hoai Duc 鄭懷德)이 19세기 초에 집필한 방대한 남부 지리서 『嘉定城通志』 같은 곳에는 이런 기술을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大南寔錄前編』에는 1698년에 중부의 流民들을 모아 남부로 보내 촌락을 만들고 토지를 개간하게 했다는 기사가 나온다.²⁰⁾ 그러나 이 기사가 농민들이 남부로 이동한 데 대한 국가 개입을 보여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록이다. 이주는 대부분 자발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필요한 비용은 자신들이 책임졌다. 위험부담도 물론 고스란히 이주자 자신들의 몫이었다. 스스로 개간 지점을 선택해서 자력으로 개척한 터이니 토지는 당연히 개인 소유였다. 이런 이주와 개간의 역사를 갖고 있던 남부베트남의 보편적인 토지 소유 형태는 私田이었다. 개개의 촌락에 公田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던 북부나 중부 베트남과는 전혀 다른 토지 소유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중부처럼 집체적 촌락 형태라든가 촌락공동체의 강한 결집력이 없는 것도 공전이 부재하고 사전을 보편화시킨 요인이었다. 미개간 토지는 무진장으로 널려 있고 토지의 개간과 농업 생산이 용이했던 남부

18) 黎貴惇, n.d., Le Xuan Giao 번역, 『撫邊雜錄』, Phu Quoc Vu Khanh Dac Trach Van Hoa Xuat Ban, Saigon, 1972, 6:243a.

19) 떠이 썬 (Tay Son 西山) 반란으로 남부의 응우옌 왕실이 패주하자 북부의 쩌 (Trinh 鄭) 씨 측에서는 군대를 보내 응우옌 왕국의 수도 푸 쑤언을 점령했다. 레 꾸이 돈은 이 신점령지로 파견되어 『撫邊雜錄』을 저술했다.

20) 『大南寔錄前編』, 1844,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東京, 1961, 7:14a.

베트남의 지리적 환경이 만들어 냈던 독특한 토지소유 관계였던 것이다.

17세기에 본격적으로 개척되기 시작한 이 지역에서는 18세기 말 경 이미 꽤 두터운 지주층이 형성되었다. 전통 시대 남부의 대토지 소유 현황을 얘기할 때면 자주 인용되는 바이지만 이 시기 레 꾸이 돈은 “[부자들 중에는] 한 집에 田奴의 수가 혹 50-60인에 이르고 소 외양간이 300-400여 개에 이른다”²¹⁾라고 한 바 있다. 이 역시 레 꾸이 돈이 직접 보고 기술한 것은 아니어서 내용을 그대로 믿을 바는 못 되지만 이때쯤이면 전노(소작인)들을 부러가며 농사를 짓는 지주들이 남부에 이미 나타났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응우옌-띠이 썬 싸움에서 응우옌 푹 아인(Nguyen Phuc Anh 阮福映, 1762-1820)을 도와 응우옌 왕조의 수립에 공헌했다. 남부의 지주들이 공식적인 정치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첫 계기이기도 했다. 개국공신으로서 관직에 진출하거나 관작을 받고 남부 사회를 지배하는 지주층으로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되는 단초가 마련된 것도 이 즈음이었다. 딘 뜨영(Dinh Tuong 定祥) 성 고 쩡(Go Cong)의 유명한 지주 집안 출신 팜 당 흥(Pham Dang Hung 范登興)이나 롱 안(Long An)의 응우옌 후인 득(Nguyen Huynh Duc 阮黃德) 같은 이들은 응우옌 왕조의 건설에 공을 세우고 작위를 받았으며 더 나아가 황실과 인척 관계를 맺는 집안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이 남부지주들의 정치 지향적 성향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들은 여간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들이 왕조의 건국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응우옌 가문의 왕자인 응우옌 푹 아인이 이곳 남부에서 활동했기 때문이었으며 더 나아가 띠이 썬 운동이 보여준 지주에 대한 과도한 적대감에 직면한 생존의 필요에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왕실에 대한 유교적 충성심 내지는 정치 지향성이 이들의 선택을 결정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남부지주들의 정치적 역량이 강화된 모습은 얼마 가지 않았다. 전쟁이

21) 黎貴惇, 앞의 책, 6:243a.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서 남부는 정치권력과는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 원인중의 하나는 “전통적인 지주가 많았던 북쪽에서는 토지에서 얻어진 경제력을 관직 획득에 투자했으나 남부의 지주들은 땅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였기 때문이라는 우드사이드(Alexander Woodside)의 지적은²²⁾ 매우 적절하다. 하지만 이것은 관직에 대한 욕구와 토지에 대한 집착이라는 남북 지주층의 성향 차이라고만은 말 할 수 없다. 북부나 중부 등의 지주층들에게 관직이란 명예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부를 보호해주는 방패이며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더 많은 부를 획득하게 해 주는 수단 이 될 수도 있었다. 이에 반해 남부의 지주들에게 관직이란 별로 수지맞지 않는 직업이었다. 형편없이 낮은 월급에다가(적어도 그들의 기준에는) 여차하면 죄인으로 몰려 처벌당하기 십상이었다.²³⁾ 그들에게는, 관직에 올라서 획득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를 토지로부터 획득할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보아 19세기 전반기 남부의 지주들은 토지 보유의 확대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II. 토지 집적

이 글의 도입부에서 필자는 응우옌 푹 응이엵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그가 전통시대와 식민시대를 거쳐서 존재했던 지주들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그 중의 한 명이 남부의 딘 뜨엵(Dinh Tuong 定祥) 성, 끼엔 호아(Kien Hoa 建和) 현, 타인 쩡(Thanh Quang 盛光) 총(總), 빈 까익(Binh Cach 平格) 촌의 쩌 반 혹(Tran Van Hoc 陳文學, 1819-1879)이다. 이 인물 또는 집안과 관련된 자료는 필자도 이미 입수하여 그 일부는

22) Alexander B Woodside, *Vietnam and the Chinese Model: A Comparative Study of Nguyen and Ching Civil Government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p.221.

23) 이 문제에 대해서는 Choi, 앞의 책, pp.109-112.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에서 요긴하게 사용한 적이 있다. 그 외 몇몇 학자들에게도 이 집안의 문서들은 남부 사회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자료들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편적이고 개괄적으로 개설적 연구서들에 인용되고 있을 뿐이다. 필자는 특히 1857년의 유언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19세기 지주의 모습을 그려내 보고자 한다.

앞서 비엣 꼭과 빈 응우옌 록의 글을 인용하여 소개한 것처럼 이 남부 지주 집안의 선조가 되었을 중부 출신의 가난한 농민의 이주, 정착 및 개간의 과정은 대동소이했을 것이다.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노동력이 더해지고 개간되는 토지는 점차 많아진다. 그러나 그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 핵심 노동력을 담당했던 부부는 나이가 들 것이고 그들이 사망하면 토지는 상속될 것이다. 베트남 특히 남부베트남에서 상속은 남녀 불문한 공평한 분배 상속이기 때문에 토지는 다시 분할되는 관계로 1, 2대 내에 급속히 대지주가 출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몇 대가 지나다 보면 비로소 이 개척자의 자손 중에 토지 집적에 비상한 재주를 갖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집안에서는 쩐 반 흑의 아버지인 쩐 반 피엔(Tran Van Phien 陳文番, 1798-1861)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이 집안의 족보에 의하면 쩐 반 피엔은 남부로 이주한 선조 쩐 반 쿵(Tran Van Khung 陳文恐)으로부터 4대 손이었다.²⁴⁾ 그렇다면 쩐 반 피엔은 남부베트남을 베트남 조정이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17세기 말 무렵에 남부로 이주한지 약 백 여 년이 되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 셈이었다.

쩐 반 피엔의 소유 토지는 얼마나 되었을까? 피엔에 대해서 일찍이 관심을 가졌던 쩐 남(Son Nam)은 쩐 반 피엔이 1857년 사망할 당시 보유했던 토지는 335畝였으며 매년 벼 약 4,000자(gia)의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는 대지주였다고 소개한 바 있다.²⁵⁾ 베트남 남부의 경우 1무는 약 5,000평방

24) 陳文番 집안 족보, 1847년 작성 시작, 필자 소장.

25) Son Nam, *Dat Gia Dinh Xuat*(옛날의 자 단 땅), Nxb Thanh Pho Ho Chi Minh,

미터로서 피엔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는 약 50만 평 정도에 해당한다. ‘자’란 남부에서 곡식에 한해서만 사용되던 계량 단위인데, 1자는 최소 36리터에서 최대 40리터까지 되니 40리터로 계산할 경우 약 160,000리터가 된다. 1830년대 한 관료의 계산에 의하면, 6인 가족이 벼 72斛으로 일 년을 살 수 있다고 했다.²⁶⁾ 1斛은 당시 보편적인 표준 계량 단위인 方으로 환산하면 2방이다. 그런데 1자는 1방과 비슷한 양이니 피엔이 소작료로만 벌어들이는 액수는 약 27가족 즉 162명이 일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액수이다. 썬 남의 저술 대부분이 그렇듯이 근거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썬 남이 본 자료는 1857년 작성된 썬 반 피엔 부부의 유언장이 틀림없다. 이 유언장은 남부 지주의 토지 소유 규모 및 토지의 성격, 그리고 당시 사회상의 일단을 더욱 상세히 알려준다.

鄉主 피엔 부처(夫妻)는 유언장(囑書)을 작성하여 미리 家財와 田土 문제를 정해 놓는다. 부처는 다섯 남매를 낳았고 첩으로부터 남매 둘을 두었다. 草田[* 논을 이름]을 만들고 사들인(造買) 것이 본촌[* 平格村] 및 雙盛, 陽春 두 개 촌락에 위치하는데 딱 335畝이다. 이 백성이 나이가 이미 육순에 이르렀고 생사를 예측하지 못하니 자식들이 후일 불화하는 마음이 생겨 송사하는 일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에 본촌 일가 분들을 청하여 유언장을 작성하여 미리 상속분을 정하고자 한다. 그 중 參屋짜리 사당 壹座에 포함된 貳廡짜리 본채(正堂) 壹間, 貳廡짜리 객실(客堂) 參間, 貳廡짜리 부엌(廚屋) 參間 및 집안의 재산인 祭器를 비롯한 각종 물건들은 마땅히 사당에 충당시키고 향화(香火)도 받드는 일에 쓰게 해야지 분배하면 안 된다. 전토 중에서는 향화전을 한덩어리 떼어내고 사당용으로도 한덩어리 남긴 후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고 살게 할 것이다. 말은 행동을 돌아보되 아버가 가르친 대로 할 것이며 행동은 말을 돌아보되 법을 지켜 행해야 할 것이다. 만일 남매 중에 그 누구라도 오늘 미리 정한 일을 따르지 아니하면 복을 울려 [일가 및 다른 자녀, 그리고 부모의 혼령까지] 그를 공격할 것이다.²⁷⁾

Ho Chi Minh City, p.73.

26) 『大南寔錄正編第二紀』, 1861, 慶應義塾大學語言研究所, 東京, 1968, 167:21a.

27) Choi, 앞의 책, Appendix Eight, 陳文番 부부 유언장, 1857.

토지의 집적은 그의 향촌 내 영향력과 상관있었다. 이 유언장 머리에 보이는 피엔의 직책 ‘鄉主’란 슈라이너(Alfred Schreiner)의 설명에 의하면 촌락 내 원로 회의 집단을 구성하는 鄉職 중 가장 높은 지위로서 재산과 나이 및 덕망을 겸비한 인물에게 주어진다.²⁸⁾ 피엔이 토지를 구입하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증서들 중에서 필자가 보유한 가장 이른 문서는 1830년에 작성된 것인데, 32살이었던 그때 피엔의 직책은 村長이었고²⁹⁾ 1831년의 두 개 문서에는 촌장³⁰⁾ 및 里長³¹⁾이었다. 1834년의 문서에는 副總이었다가³²⁾ 1839년의 문서에서는 그가 該總 즉 총의 책임자로 승진한 것이 확인된다.³³⁾ 그랬다가 1846년의 문서에는 이름 앞에 아무런 표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³⁴⁾ 해충을 끝으로 촌락 행정 업무는 그만두고 촌락 원로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 같으며 이 유언장이 작성될 무렵 그 원로회의의 좌장으로까지 승진했다고 볼 수 있다.

유언장에서 보이는 논을 “만들거나 사들였다(造買)”는 말은 집적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시 남부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만들거나 사들여서’ 모은 것이라는 말로써 지주로서 이 사람의 일생이 토지를 개간하고 사들이는 것으로만 일관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다. 이 유언장에는 보이지 않는 더 많은 토지를 사들인 증거들은 있다. 예를 들어 피엔은 적어도 1839년, 1844년, 1846년에 각각 약 45무, 74무, 27무를 사들였다는 증거들을 토지 매매 증서와 1855년의 地簿에서 남기고 있다.³⁵⁾ 단지 유언장이 작성되기 이전에 사라진 토지들은

28) Alfred Schreiner, *Les Institutions Annamites en Basse-Cochinchine avant la Conquête Française* Tome 2, Claude & Cie, Saigon, 1901, p.23.

29) Choi, 앞의 책, Appendix Two, 陳文番 부부 토지 매매 증서, 1830.

30) 앞의 책, Appendix Three, 陳文番 부부 토지 매매 증서, 1831a.

31) 陳文番 부부 토지 매매 증서, 1831b, 필자 소장.

32) Choi, 앞의 책, Appendix Five, 陳文番 부부 토지 매매 증서, 1834.

33) 앞의 책, Appendix Six, 陳文番 부부 토지 매매 증서, 1839.

34) 앞의 책, Appendix Seven, 陳文番 부부 토지 매매 증서, 1846.

35) 앞의 책, Appendix Six; Appendix Seven; 陳文番 부부 토지 매매 증서, 1844, 필자 소장; 平格村 地簿a, 1855, 필자 소장; 平格村 地簿b, 1855, Vien Han Nom, Vien

필요에 따라서 팔려 나간 것들이었다. 19세기 남부에서는 상품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토지가 활발히 매매되고 있었고 1836년 토지 경제가 새로이 측량되고(度田) 측량 단위가 표준 단위로 통일된 데다가 중앙 조정이 “경작만 한다면 얼마든지 토지를 보유해도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게 됨에 따라 이런 토지 매매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다.³⁶⁾

토지의 집적 범위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썬 남은 피엔의 토지 규모가 한 개 마을 전체 면적을 합친 것보다 넓은 규모였다고 평가하는데,³⁷⁾ 단 순히 면적 규모로서뿐만 아니라 소유의 범주가 자신의 마을인 빈 까익 촌을 넘어 인근의 송 타인(Song Thanh 雙盛) 촌이라든가 즈영 쑤언(Duong Xuan 陽春) 촌에까지 이르러 있음을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다. 장남 썬 반 후 대에 이르러서 토지의 집적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1876년에 작성된 썬 반 후의 유언장에는 그의 토지가 빈 까익, 송 타인, 즈영 쑤언은 물론이고 떤 목(Tan Moc 新睦), 빈 당(Binh Dang 平登), 롱 쯤(Long Tri 龍池), 자 타인(Gia Thanh 嘉盛) 촌에까지 있음이 확인된다.³⁸⁾

토지는 소작인을 부려 부치고 소작료는 빠짐없이 받아 내겠지만 지주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충실히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1836년 남부에서는 토지 측량 즉 탁전에 이어 지부가 최초로 작성되었다. 모든 토지는 등록되어 정부는 지부를 바탕으로 토지 실태를 파악하고 세금을 물리려 했다. 조정에서는 토지를 되도록 많이(적어도 정확히) 측정하고 등재해 세수를 늘리려 했고 토지 소유주들은 가능한 한 징세를 피하려 했기 때문에 토지를 숨기거나 관을 매수하는 경우가 비밀비재했다는 기사들이 조정 측의 사료에는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피엔의 빈 까익 촌이 소재한 딘 뜨영 성의 한 관리가 탁전을 할 때 촌민들로부터 무수히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³⁹⁾ 엄한 처벌이 뒤따르곤 했지만

Khoa Hoc Xa Hoi, Serial No. 13, Ho Chi Minh City.

36) Choi, 앞의 책, pp.169-170; 186.

37) Son Nam, 앞의 책, p.73.

38) 陳文學 부부 유언장, 1876, 필자 소장.

토지 보유 농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다 등재하는 경우의 부담 증가를 생각할 때 세금을 피할 방법을 궁리해 보는 것도 당연했다. 등재되는 경우 1무 당 벼 26升(약 78리터)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⁴⁰⁾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335무를 보유하고 거기서 매년 4,000자의 소작료 수입이 있던 피엔의 경우를 1836년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그가 거들 소작료가 무 당 평균 11자였으니 조정에 낼 세금은 소작료 수입의 20퍼센트가 된다. 소작료 수입 중 20퍼센트 정도를 나라에 더 내든가 아니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소작료를 20퍼센트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이런 경우를 당해서 피엔이 선택한 방법은 적당한 선에서 국가를 속이는 것이었다. 1836년 지부가 만들어질 때 피엔은 副總이거나 該總 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지부에 그의 토지는 51무 정도로 기록되어 있지만 토지매매증서들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는 1836년 당시 최소 44무는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⁴¹⁾ 구체적인 토지 분배 내역 즉 유언장에서는 이 사실이 더 드러난다. 앞으로 보게 될 토지 지분들 중에는 위치를 설명할 때 “지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외에 “장부”라든가, “문계”, 또는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라고 써여 있는 것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토지문서인 지부에 기록되지 않은 땅들을 의미한다.

또 한 가지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것은 유언장의 주체가 피엔 夫妻라는 점이다. 재산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에게 공동으로 있다. 그래서 유언서 뒷 부분에는 부부 공동의 서명이 나온다. 피엔은 手記를 하고 그의 아내 쓰엉 티 쌍(Truong Thi Sang 張氏創)은 베트남 사람들이 ‘디엠 쯤’이라고 부르는, 손가락을 종이에 대고 각 마디에 붓으로 점을 찍는 사인을 했다. 즉 한 남성 지주는 토지에 대해서 가장장적 절대권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상속 또한 장자 상속이 아니었던 만큼 토지에 대한 지주(남녀 불문)의

39) 『大南寔錄正編第二紀』, 169:6.

40) 앞의 책 172:10b-12b.

41) Choi, 앞의 책, p.181.

권리 내지 권한 행사에는 가부장적 절대권을 갖는 지주에 비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토지 및 토지에 딸린 소작인에 대한 권력의 분배인 셈인데 이런 권력 분배가 덜 전체화된 지주상에 일조를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 외 사당전이나 향화전, 사당의 존재 및 규모, 그리고 각 祭器 및 기물의 분배 불가 지시 등을 통해서 우리는 조상 숭배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독특한 집착은 남부 사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 분배 규모 내지 성격은 유언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확인이 되겠지만 조상을 모시는 전통적 관습의 강조가 이 지주의 사회적 권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유언서의 내용 뒤에는 작성 연대와 피엔 부부의 서명, 그리고 피엔 부부의 유언을 작성한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곧 이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토지 분배 내역이 나온다. 먼저 분배가 불가하다고 못 박은 향화전과 사당전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 香火田은 원래 3繩이었는데 탁전 이후에 한 필지 23무 정도가 되었다. 소작을 주고 있으며 본촌에 있다. [경계의] 동서사방은 지부에 기재된 대로이다. 우리 부부의 제사에 사용한다. 벼(粟) 290자가 [소작료로] 나온다.
- 祠堂田으로 충당할 것은 원래 4승이었는데 탁전 이후 한 필지 27무 정도가 되었다. 소작을 주고 있으며 본촌에 소재한다. 동서사방은 지부에 기재된 대로이며 조부모 및 증조부모 등의 제사 4일 및 본인의 형제자매 등이 제사 관련 일로 모이는 날 비용으로 사용한다. 모이는 날은 3월 22일 한번이다. 벼 320자가 나온다. 이상의 향화 관련 두 개 땅은 장남 백호(百戶) 學에게 주어 봉제사를 총괄하게 한다.⁴²⁾

이 지주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향화전과 사당전은 장남이 계승하여 봉제사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메콩 유역에서 막내아들이나 막내딸이 재산

42) 앞의 책, Appendix Eight.

을 상속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지적들도 있긴 하다.⁴³⁾ 또 여기서 다루는 토지의 상속이란 것도 이때 비로소 토지를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큰 자녀로부터 차례로(특히 출가와 함께) 이미 나누어 준 것을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망할 즈음에는 막내에게 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상속이 막내로 이어지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피엔 부처의 경우는, 각 토지에 소작료가 명기되고 그 소작료를 기준으로 거의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즈음까지 피엔 부부가 경영을 하다가 비로소 넘겨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향화전과 사당전의 관리권은 장자에게 상속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장자상속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화전과 사당전만 장남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토지는 거의 정확한 균분상속이다. 이렇듯 조상 제사와 관련된 토지를 장남에게 물려주는 것은 1818년에 작성된 응우옌 반 꾸 부부의 유언장에도 나타난다.⁴⁴⁾ 부모가 한날 한시에 사망하는 것은 아니니 한 명 사후 나머지 한 명에 대한 부양 책임 역시 향화전을 상속한 장남에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보유하고 있는 네 개의 유언장 중 1826년에 生徒 응우옌 반 르엉(Nguyen Van Luong 阮文良) 부부의 경우 유일하게 장녀에게 향화전을 상속한 경우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들 부부가 딸만 셋을 두었기 때문이었다.⁴⁵⁾

향화전과 사당전은 공히 어떤 방법으로 입수된 것인가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뒤에 소개할 각 지분은 하나같이 原買者들을 명기하고 있으나 이 두 땅은 그게 없으니 ‘만들거나 산 것’ 중 ‘만든 것’에 포함되는 범주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엔 역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을 것이고 자신의 증조부까지의 제사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두 범주의 토지는 상속분일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역시 ‘만든 것’의 존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전자는

43) 유인선, 앞의 글, p.376.

44) Choi, 앞의 책, Appendix One, 阮文具 부부 유언장, 1818.

45) 阮文良 부부 유언장, 1826, 필자 소장.

피엔 부부의 주도로 개간된 토지이고 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옹우옌 반 꾸의 사례에서 장남에게 물려주는 향화전은 부부가 강의 지류 옆에 정착하여 처음으로 개간한 토지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⁴⁶⁾

이렇듯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이 지주가 경영하던 토지는 ‘만들거나 산 것’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토지도 포함된다. 장남 전 반 흑에게 상속된 이 두 개의 지분은 1876년 전 반 흑이 유언장을 남길 때도 그대로 다시 그의 장남에게 상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향화와 관련된 토지는 장남에게 대를 이어 상속되는 것이지 분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은 명확히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대를 이어 가면서 향화전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은, 더해지는 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 반 흑 역시 유언장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향화전 두 덩어리에 더해 자신 명의의 토지 두 덩어리 도합 37.5무를 향화전으로 내놓아 장남에게 상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추가되는 향화전의 존재를 통해 우리는 지주의 토지 집적과 관련된 또 한 가지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재산 분배가 부모의 나이 육십 무렵 그러니까 장남의 나이 사십이 될 때에 가서야 이루어진다면 다른 형제들과의 균등 분배로 인해 장남의 몫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곧 보게 될 분배 내역 중에서 장남의 지분과 이 향화전을 합쳐도 전 반 흑이 물려받게 되는 토지는 95무였다. 이런 전 반 흑이 약 20년 뒤인 1876년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는 도합 438무로 다섯 배 가까이 토지가 늘어나는데⁴⁷⁾ 흑이 토지를 늘리게 되는 밑천은 95무에서 시작되었을까? 아니었다. 이전부터 그는 토지를 집적하고 있었다. 그 증거가 바로 전 반 흑이 추가의 향화전 몫으로 내놓은 땅이다. 이 땅 두 필지는 1836년 그러니까 흑의 나이 17살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서⁴⁸⁾ 부모가 사 주었음이

46) Choi, 앞의 책, p.181.

47) 陳文學 부부 유언장.

48) 앞의 문서.

틀림없다. 쩐 반 혹의 유연장을 보면 그 역시 자신의 장남, 차남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음을 알 수 있다.⁴⁹⁾ 이렇듯 부모가 사 주거나 넘겨준 토지로 경제활동 연령에 들어서는 20대 전후 또는 혼인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경영을 시작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장남은 부모에 기속하면서 토지 경영의 보조적 존재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독립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시점부터 지주가 되는게 아니라 이미 이 시점에 지주가 되어 있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이 지주의 재산에 추가되는 일부 몫이었을 뿐이었다.

쩐 반 피엔의 보유 토지 대부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아래 각 자녀에 대한 토지 분배 내역을 보면 이 사실이 명확해진다.

- 長男 百戶 學의 지분 토지는 원래 阮文誼로부터 매입한 3승인데 탁전 이후 일개 필지 45무가 되었다. 소작을 주었고 본촌에 소재한다. 동서사방은 지부의 내용과 같다. 벼 500자가 나온다.
- 次男 秀才 昭의 지분 토지는 원래 黎文廉의 땅 3승을 매입한 것인데 탁전이 이루어져 나누어 받은 것이 26무이다. 소작을 주었고 동서사방은 장부와 같으며 북쪽으로는 딸아이 奎의 상속 지분 땅과 가깝다. 또 한 지분을 더해 줄 것인데, 원래 黎氏盛의 토지 1승을 매입한 것으로 8무이다. 또 한 지분은 雄으로부터 산 것이며, 또 한 지분은 (?)로부터 산 것이다. 이 세 지분은 모두 본촌에 있으며 동서사방은 文契를 참조하라. 550자가 나온다.
- 次次男 百戶 錠의 지분 토지는 3승으로서 원래 黎氏盛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탁전이 이루어져 25무를 나누어 받았고 본촌에 소재한다. 동서사방은 文契를 참고할 것이다. 또 한 지분은 黎氏好의 토지 8무를 산 것인데 陽春村에 소재한다. 동서사방은 文契와 같다. 벼 550자가 나온다.
- 딸 浬의 지분은 黎氏山으로부터 구입한 토지 43무이며 陽春村에 있다. 동서사방은 文契에 있다. 벼 550자가 나온다.
- 차녀 奎의 지분은 黎文廉으로부터 구입한 6승으로서 탁전이 이루어져 세금을 내는 곳이다. 48무이며 소작을 주고 있다. 본촌에 있으며 동서사방은 장부 내에 있는 대로이다. 남쪽으로는 수재 昭가 받은 논에 가깝다. 벼 570자가 나온다.

49) 앞의 문서.

- 첩의 아들 文教의 지분 토지는 阮文勇으로부터 구입한 半所로서 원 장부에는 31무 5고이다. 雙盛村에 있으며 동서사방은 계약서 내에 보인다. 또 武文擇과 武輝宣으로부터 산 땅 10무를 더 보태 준다. 雙盛村에 있으며 동서사방은 계약서 안에 보인다. 이 땅에서 벼 350자가 나온다.
- 첩의 딸 窈의 지분은 阮文勇으로부터 산 땅의 半所로서 원 장부에는 31무 5고이다. 雙盛村에 있다. 동서사방은 계약서 내에 보인다. 또 한 지분은 陳文論으로부터 구입한 5무이다. 雙盛村에 있다. 동서사방은 문건 내에 보인다. 벼 330자가 나온다.⁵⁰⁾

향화전과 사당전에 대한 언급에도 나오지만 여기에도 토지의 규모를 ‘繩’으로 표기하고 있는 게 많다. 승이란 남부인들이 사용하던 말 ‘저이(day, * 끈 또는 줄이라는 뜻)’를 한자로 표기한 것인데 토지를 세던 단위였다. 1저이가 통일된 계량단위로 얼마나 되는지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하지는 않다. 이런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1836년에 탁전을 실시하고 토지 계량단위를 ‘畝筭尺寸’으로 통일시켰다. 중요한 것은 ‘승(저이)’ 단위로 계산해서 매입했던 토지는 모두 그렇게 표기해 놓은 것이다. 때문에 ‘승’이라는 단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해당 토지를 1836년 이전에 샀는지 이후에 샀는지를 알 수 있다. 앞서 필자가 전 반 혹은 1876년 향화전으로 내어 놓게 되는 두 필지의 땅이 1836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1836년 이전 토지 구입은 대부분이 수십 무에 해당하는 규모의 거래였다. 일반 소농의 경작 한도가 4-5무 정도임을 고려할 때 토지의 매입은 소농으로부터가 아니라 대농 또는 지주로부터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 이런 거래는 모두 본촌 즉 피엔이 살고 있던 빈 까의 촌 내에서 이루어졌다. 응우옌 폭 응이엵은 피엔의 장남 전 반 혹은 토지의 많은 부분이 파산한 지주로부터 구매한 것이든가, 빚을 갚지 못한 소농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⁵¹⁾ 전 반 피엔의 토지 매입도 비슷한 과정으로 이루어

50) Choi, 앞의 책, Appendix Eight.

51) Nguyen Phuc Nghiep, 앞의 글, p.49.

어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매입 토지의 규모로 볼 때 전자의 경우가 더 보편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쩐 반 피엔 역시 필요에 따라서는 토지를 팔았던 것이 확인되는 바이니 일회 토지 구입의 규모로만 보아서 꼭 파산한 지주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쩐 반 혹은 프랑스 침입과 대불 항쟁기를 겪었던 만큼 그 과정에서 파산한 지주가 많았을 것이나 아직 쩐 반 피엔의 시기에는 파산 지주가 나올 이유는 없다. 경제적 요인에 의한 지주들 간의 토지 거래가 역시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주들이 일방 분해되고 일방 대지주로 성장하는 분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주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은 당시의 토지 거래 수단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토지 거래시 결제는 현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피엔 부부가 1830년에 勝이라는 사람의 토지 3승을 구입했을 때는 1,150貫을 지불했다.⁵²⁾ 판 후이 레(Phan Huy Le)의 연구에 의하면 1826 남부베트남 쌀 가격이 方(28.5kg) 당 0.9貫이었다고 한다.⁵³⁾ 그렇다면 우리 개념으로 대략 80kg 들이 쌀 380가마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이 땅을 샀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돈은 당연히 쌀을 판매하여 마련된 금액이다. 1830년이라면 황제를 비롯한 조정의 관료들이 “남부는 토지가 비옥하길 천하의 으뜸이나 [...] 奸商들이 쌀을 몰래 외국에 내다 판다”⁵⁴⁾라는 요지의 불평을 빈번히 하고 있던 때였다. 아울러 ‘富戶’ 또는 ‘富民’들의 쌀 매점이 쌀 가격 등귀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된 바도 있는데,⁵⁵⁾ 이들 중에는 당연히 남부의 지주들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인 상인 또는 베트남 내 거주 중국들에 의해 동남아시아 각지와 중국 시장까지 연계되는 쌀 유

52) Choi, 앞의 책, Appendix Two.

53) Phan Huy Le, “Chau Ban Trieu Nguyen va Chau Ban Nam Minh Menh 6-7(완조 주본과 민 망 6-7년의 朱本),“ manuscript, 필자 소장, p.33.

54) 『大南寔錄正編第二紀』, 26:10; 79:27.

55) 앞의 책, 65:3b-4a; 藤原利一朗, 『アジアの研究』, 法藏館, 京都, 1986, p.283.

토망의 한 쪽 끝에 이 지주는 서 있었던 것이다. 쌀 380가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산 땅이 재산 분배 시점까지 남아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때⁵⁶⁾ 피엔은 다시 누군가에게 이 땅을 팔았다는 얘기가 된다. 땅을 판 勝도 역시 이 땅을 “만들거나 사들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⁵⁷⁾ 이 3승의 토지 중 일부는 자기가 개간한 것이지만 나머지는 누군가로부터 사들인 것을 다시 피엔에게 판 것이다. 이렇듯 토지는 현금을 매개로 한 활발한 매매 과정을 거치면서 소수의 지주에게 땅이 집적되고 있었던 것이 19세기 전반의 상황이었다.

탁전이 이루어진 뒤에는 토지의 매입이 더욱 적극적으로 되면서 본촌을 넘어 인근 陽春村과 雙盛村에서도 매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언서에서 次次男과 딸, 그리고 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에게 물려준 토지는 모두 陽春村과 雙盛村 소재인데, 토지의 단위로 ‘승’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무’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모두 1836년 이후에 구입한 것이 확실하다.

상속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유언장에서는 남녀 균분의 원칙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장남이 향화전 및 사당전을 상속 받는 것 외에는). 단지 첩의 자녀들에게는 본처의 자녀들보다 약간 적은 분량이 분배되었지만 이 남매 간의 지분은 역시 균등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균등 또는 차등의 기준이 되는 것이 토지의 양이라기보다는 소작료였다는 점이다. 피엔 부부의 토지 분배는 소작료의 양에 따라 사려 깊게 조정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소작료는 고정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는 결국 각 토지의 생산량은 토지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의미이다. 그 전체는 남부 지역이 우기와 건기에 따른 기후 예측이 비교적 가능하고 자연재해가 거의 없다는 데에 있다. 스콧은 일찍이 정액소작료는 식민지 시대의 현상으로서 자연재해가 빈번해 수확량이 매년 일정하지 않은 곳에서, 그리고 부채지주가 많이 출현하면서 이 현상

56) Choi, 앞의 책, Appendix Eight.

57) 앞의 책, Appendix Two.

은 점차 증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⁸⁾ 그러나 피엔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전통시대부터, 그리고 생산량이 일정하고 자연재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채지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부에서는 정액지대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피엔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부에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소작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단지, 이렇게 소작료가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지주로 하여금 일정한 소작 수입을 가늠하게 하여 새로운 투자를 모색하게 했을 것이라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수입을 늘이기 위해선 소작료를 인상한다든가 해당 토지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노력한다기보다는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간하는 것이 주요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전통시대 남부에서 정액지대가 토지집적을 진행시키는 한 요소였던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소작인과의 관계

토지 집적 및 대토지 소유제의 발전은 당연히 중앙 조정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836년 남부의 실정 파악을 위해서 經略使로 파견된 중부 출신 중앙 관료 쓰영 당 꾸에 (Truong Dang Que 張登桂)가 “强豪가 세를 의지해 겸병하는 바람에 가난한 자는 송곳을 쫓을 땅도 없다”⁵⁹⁾고 표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쓰영 당 꾸에의 이 말은 그로부터 15-20년 전 남부 출신의 고급 관료 진 화이 득(Trinh Hoai Duc 鄭懷德)이 “남부인은 하루 세끼 모두 밥을 먹는다”⁶⁰⁾라는 표현으로써 남부인들 평균 생활의 풍요로움을 강조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하루 세끼를 그것도 밥으로만 먹던 것이 남부인들의

58) Scott, 앞의 책, p.81.

59) 『大南寔錄正編第二紀』, 164:1a.

60) 鄭懷德., n.d., 『嘉定城通志』, BFE0 Microfilm A. 1561, 4:7.

생활수준이었는데, 어찌하여 이렇듯 빈부격차가 심해졌는가? 쩌 화이 득이 남부에 대해서 기술하던 1820년 무렵부터 쓰영 당 꾸에가 남부에 왔던 시점 사이에는 總鎮官 레 반 주엣(Le Van Duyet 黎文悅, 1763-1832)의 지배기가 있었고 레 반 주엣 사후 3년간 반란이 있었다. 그런데, 레 반 주엣 치세기는 남부가 극히 평온하고 번성하던 시기였음이 확실하고, 반란은 초기 몇 개월간 남부 전역을 휩쓸다가 반란군 주력이 사이공 성으로 들어가면서 성 이외의 지역은 조정군이 장악하고 있었음을 기억할 때 양 기술의 차이는 지나칠 정도로 대조적이다. 남부 농민에 대한 진단을 놓고 볼 때 중부 출신 쓰영 당 꾸에의 말이 맞을까, 남부 출신 쩌 화이 득의 말이 맞을까?

일단 조정은 쓰영 당 꾸에의 의견에 기초하여 과감한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 그것은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으로서, 이는 지주들이 과도하게 많이 갖고 있는 사전을 빼앗아 공전으로 만들어 소작인들에게 사용권을 분배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서 1836년부터 쓰영 당 꾸에의 주도로 남부에서 度田이 시행되었고 소유주를 명확히 명기하는 地簿가 편찬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주들의 토지 몰수가 진행되어 상당량의 公田이 만들어진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남부의 특수성은 이 공전을 소작인들에게 분배할 때 여실히 드러났다. 조정에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려 해도 그들이 토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⁶¹⁾ 이에 당황하던 조정 측은 격렬한 논의 끝에 결국 토지의 무조건적인 몰수를 포기하고 공전도 극히 적은 양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내는 데 그쳤다.

그렇다면 조정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나누어주어도 받지 않아 조정의 공전 창출 정책을 좌절케 한 이 남부의 소작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송곳 하나 꽃을 땅이 없다”는 이들 “가난한” 농민들이 땅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가? 스콧이 주장한대로 “대부분의 경우 농민들은 소작이 생존

61) 『大南寔錄正編第二紀』, 210:5b.

위기 보호(subsistence crisis insurance)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선호⁶²⁾했기 때문이었을까?

소작인들은 지주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인구는 많은데 토지는 부족한 북부 또는 중부로부터 얼마 전에 이주해 온 자들이거나 그런 이주민의 자손들이다. 토지를 찾아 남부로 내려온 농민들이 왜 토지를 주어도 받지 않고 즐겨 소작인이 되었던가? 쩌 반 저우의 표현대로 “소작인보다는 지주가 아쉬울 게 많았던” 남부의 지주-소작 관계의 본질은 여기에 숨어 있다.

조정에서 파견된 경력사 쓰엉 당 꾸에가 1836년 당시 한 말은 남부 실상을 크게 과장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제 막 남부의 반란(1833-1835)을 진압하고 들어온 정복자로서 충분히 예견되는 질타이며 상황을 이렇게 만든 남부 지배자들(레 반 주엿 포함)에 대한 의도적인 힐난이었다. ‘악화된 상황’을 자신들이 바로 잡겠다는 장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남부에서는 소작을 ‘따 디엔(ta dien 借田)’이라 한다. 토지를 빌린다는 뜻이다. 이는 베트남 전역에서 사용되는 말로서, 토지를 빌린다 함은 소작(tenant 또는 sharecropper)의 원래 의미를 십분 살린 말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남부의 특수성은, 소작의 개념이 말 그대로 따 디엔 즉 토지를 빌리는 그 자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스콧이나 푼킨 공히 그러하듯 후견인(patron)인 지주에 대한 피후견인(client)으로 규정하기도 힘든 존재들이다. 인신예속적 성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위계질서도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남부에서 따 디엔이란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상호 필요와 자유 의지에 따른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임차농 개념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

19세기 남부는 경지, 또는 경지로 전환할 수 있는 토지가 풍부한 데 비해 노동력 공급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남부인들은 거주지를 쉽게 옮기는 유동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갖고 있기도 하다. 개척, 또는 정착의 용이

62) Scott, 앞의 책, p.44.

성 때문에 이 시기 남부인들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불편함이 느껴질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다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있었다. 군역을 피해 도망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일도 아주 흔했다. 그래서 “父子, 祖孫이 각각 다른 마을에 살며”⁶³⁾ 姓을 바꾸는 일도 흔해서 “한 가족 내에 만약 남자가 셋 있다면 군역을 피해 각각은 성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달아난다”⁶⁴⁾고 조정의 관리들은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은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자연 환경 때문이었다. 대부분 소작인의 경우도 이런 유동성을 갖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지주의 입장에서 소작인이란 언제고 미련 없이 쉽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였다. 편 반 저우가 말 한 ‘아쉬운 지주’는 바로 이런 환경 하의 지주였던 것이다.

소작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토지가 없이 남의 작인이 되는 것은 국가의 자의적인 세금 부과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으며 더 나아가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이었고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의 문제였던 것이지 스콧의 주장대로 생존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주의 도덕성에 기대를 거는 심리가 소작인이 되는 동기는 아니었다. 1840년 남부 빈 롱(Vinh Long 永隆) 성의 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관찰을 보고하고 있다: “한 마을에 토지 소유자는 열 중의 둘 셋 밖에 되지 않는다. 병사를 징발하는 일이 생길 때면 토지 없는 자들은 ‘우리들은 토지가 없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 때문에 그들은 즐겨 소작인이 된다.”⁶⁵⁾ 간혹 지주가 병역을 피하는 이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토지에 특정 소작인을 긴박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긴 했으나 그다지 큰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자기 마을로 흘러 들어온(예를 들어, 병역을 피해 살던 곳을 떠나) 외지인은 귀중한 노동력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조정 측은 “부자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결코 묻지 않는다”⁶⁶⁾고 불평

63) 『大南寔錄正編第二紀』, 61:5b.

64) 『大南寔錄正編第四紀』, 1892,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東京, 1980, 19:2b.

65) 『大南寔錄正編第二紀』, 209:24b-25a.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주의 보호를 받고 살지만, 하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던 소작인들이 정세의 대상이 되고, 군역에 동원될 수도 있는 공전 경작자가 되길 마다하는 것은 당연했다. 팝킨은 전통시대부터 이어지던 지주-소작의 팽팽한 긴장이 농민들로 하여금 까오 다이(Cao Dai)나 호아 하오(Hoa Hao) 등의 신흥 종교 집단을 보호자로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했지만,⁶⁷⁾ 사실 전통 시대에 이미 소작인들은 보호자를 갖고 있었고, 그것은 지주였다. 그러나 여기서 ‘보호’란 윤리적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안전처의 제공 구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스콧의 “안전우선(safety first)” 원칙도 지주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농민의 요구나 그에 상응하는 지주의 도덕적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농민들의 자발적 선택, 즉 ‘안전한 곳의 선택’에 의해서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소작인의 부담은 어느 정도였기에 ‘즐거 소작인이 되는’ 형편일 수 있었던가? 필자는 인접한 平登村과 新睦村의 사례를 통해서 1860년의 소작료를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1무 당 연 평균 벼 12-13자였다.⁶⁸⁾ 앞에서 검토한 쩌 반 피엔의 경우 총 면적 335무의 땅에서 4,000자의 소작료를 받아낸다고 했으니 그의 무 당 평균 소작료 11.94자와 대략 비슷하다. 이 정도의 액수는 당시 조정에서 무 당 벼 약 2.6자를 징수하던 것과⁶⁹⁾ 비교하자면 약 6배 높은 액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한 소작인 가족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의 양과 이 지역의 생산력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곳의 생산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아낼 자료는 아직 찾아 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인은 일찍이 비엔 호아와 안 장(An Giang 安江) 성의 생산력을 대략이나마 계산해 낸 적이 있는데, 비엔 호아는 무 당 23.4방이며, 안 장 성은 30.6방이다.⁷⁰⁾ 넉넉하

66) 『大南寔錄第二紀』, 195:15b.

67) Popkin, 앞의 책, pp.193-213.

68) Choi, 앞의 책, p.188.

69) 『大南寔錄正編第二紀』, 172:12b.

70) Choi, 앞의 책, p.177.

게 잡아 비엔 호아의 생산력을 적용해 보기로 한다면, 1무에서 생산물 중 그 해 평균 소작료를 제한한다고 할 때 비 약 5.2-5.7방이 남는다. 당시 남부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병사의 봉급은 1년에 12방이었는데, 소작인으로서 병사 한 명의 일년치 봉급을 벌려 한다면 2-3무만 경작하면 되었다⁷¹⁾. 하지만 다시 말하건대 이는 비엔 호아의 생산력 그것도 일반 농민이 아닌 범법자들을 투입하여 생산한 최소치일 뿐이다. 빈 당이나 면 목 촌이 있는 단 뜨영 성 지역은 남부베트남의 6개 省 중 가장 토질이 비옥하고 특히나 미 토와 사이공 사이에 끼인 이 지역은 19세기 전반 가장 농업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었다는 사실⁷²⁾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 장 성의 생산력, 즉 무 당 30.6방을 적용한다면 병사 일인의 일년치 봉급을 벌기 위해서 소작인 일인은 단지 1.5무 정도만 경작하면 되었다. 그러나 남부베트남에서는 일모작이 행해지고 농사 방식이 비교적 간단해서 한 가족이 약 5무 정도는 경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촌락에서 나타나는 소작인의 경작 규모 역시 평균 3-5무였다. 이 소작인들이 자작 겸 소작인 경우에 경작 규모는 더 커진다. 잉여가 가능하며 잉여는 시장을 통해 거래될 수 있었다. 지주들도 그랬지만 소농 및 소작인 역시 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배를 몰고 강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교역에 종사하던 상인들이었다. 이들이 바로 팝킨의 “독립적 소규모 교역자(independent small traders)”로서 그는 중국인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다고 했지만,⁷³⁾ 19세기 전반 내내 성장하고 있던 베트남 상인들도 “독립적 소규모 교역자”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⁷⁴⁾ 중요한 것은 이 중개인들에 의해 연결되는 시장의 (국제시장까지) 존재가 소작인들로 하여금 지주에게 덜 의존적이게 만든 요소가 되었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71) 앞의 책, p. 188.

72) 菊池一雅, 『ベトナムの農民』, 古今書院, 東京, 1966, p.189.

73) Popkin, 앞의 책, p.80.

74) 崔秉旭, 「19세기 중반 남부베트남의 대외교역과 베트남 상인층의 성장」, 『東洋史學研究』 제78집, 2002.

다음은 1860년 빈 당과 떼 목의 소작료 내역 중의 하나이다.

膾는 땅 한 곳 4무 2고 7척 5촌을 빌렸다. 胡氏富의 소유로 올라 있다. 빌린 가격 (價借)은 벼 100자이다. [그 외] 蜜蠟 1片, 쌀 1자, 오리 1쌍 [추가된다].⁷⁵⁾

위에서 보듯 소작인은 기본적인 소작료 외에도 밀랍이라든가, 백미, 오리도 매년 지주에게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벌을 치고 오리를 길러서 밀랍 몇 片이나 오리 한 두 마리를 마련하는 일은 녹지와 수풀이 많아 꽃이 풍부하고 벌레나 물고기가 지천으로 뛰노는 하천과 도랑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남부 베트남의 지리 환경을 고려할 때 거의 부담이 되지 않는 양이었다. 이 외에도 공 레 (cong le 貢禮)라고 하는, 명절 때 지주 집안에서 큰 일을 치를 때 돕기 위한 노역 봉사가 있었다. 그러나 남부에서 소작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정도로 공 레가 부과되었을 리도 없고, 과도한 공 레 부담을 그대로 받아들일 소작인도 없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소작인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비극이라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토지가 없는 것을 이유로 해서 병역에서 면제될 수가 있었으며 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身稅도 낼 필요가 없었다. 만약 그들이 강제적으로 징집된다고 할 때 도망가 버리는 일은 토지 소유자보다 더 간단할 수 있었으며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많은 징집 대상자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도망쳐 낯선 곳의 소작인으로 눌러 앉았던 것이다. 소작인이 토지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현상은 프랑스 식민 지배 시기에도 종종 목격되던 현상이었으며 지주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소작인을 토지에 긴박하려 하였다.⁷⁶⁾ 고도화된 프랑스의 행정 체제 및 그에 따른 신분증 제도 등을 이용하여 지주들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소작인들을 토지에 묶고 소작인들은 지주에게 예속되어 갔지만, 전통시대에는 소작인에게 우호적인 여건

75) Choi, 앞의 책, Appendix Nine, 平登, 新陸村 소작료 대장, 1860.

76) Popkin, 앞의 책, p.208; Brocheux, 앞의 책, p.25.

을 마련해 주는 것 이외에는 별로 뾰족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 남부인이 “하루에 세 끼를 쌀밥만 먹는다”고 하면서 여유로움을 강조한 쩌 화이 등의 기술이나 “가난한 자는 송곳 꽃을 땅도 없다”라는 쩌영 당 꾸에의 호들갑은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쩌영 당 꾸에의 표현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貧者)”란 지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만을 염두에 두면 족할 것이다.

IV. 둔전과 촌락 건설(屯田立邑)

앞에서 소개한 쩌 반 피엔의 유언장에서 장남 쩌 반 후의 직책 ‘百戶’를 주목할 만 하다. 쩌 반 후는 자신의 유언장에서도 이 백호 직책을 그대로 쓰고 있다. 꼭 호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백호란 말 그대로 백가구를 통괄하는 직책으로서 관할 규모에 따라 千戶, 萬戶도 사용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19세기 남부베트남에서 백호 직위는 지주들의 사회적 역할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우선 1839년 캄보디아 경영을 위한 군량미를 조정에 기부하고 그것을 캄보디아까지 수송하는 공이 있는 자들에게 부여한 8품-9품의 명예직이 백호였다.⁷⁷⁾ 그러나 1839년에 갓 20살이었을 후이 이런 일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는 다른 형태의 공훈에 대한 보상으로 백호직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뜨 득(Tu Duc 嗣德, 1848-1883) 초기에 있던 새로운 형태의 둔전 설치 및 입읍 정책과 상관이 있었다.

南進의 역사 속에서 베트남은 즐겨 둔전 경영을 영토의 확장과 변방 보호 목적으로 사용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둔전이란 국가의 군대가 점유한 토지를 국가가 운용하는 군사를 노동력으로 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식량과 농기구, 물소 등을 사용하는 생산활동으로서 공적 활동이었다. 좁

77) 『大南寔錄正編第二紀』, 201:8b.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병사들은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봉급을 받고 가족까지도 딸린 상태에서 평생을 군인으로 지내야 하는 직업군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둔전이란 국가 경영 농장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남부에서 최초로 둔전이 설치되는 것은 응우옌 폭 아인에 의해서였다. 1788년 남부 사이공을 근거지로 하여 차 딘 정권이 수립된 이듬해 “최초로 둔전을 설치했다(初置屯田)”⁷⁸⁾는 기사가 나온 이래 19세기 전반 동안 남부베트남에서는 꾸준히 둔전이 설치되었고 특히 레 반 주엣이 남부를 지배하던 시기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북부나 중부로부터 남부로 유배온 죄수들까지도 둔전에 편입시켜 토지의 개간과 미곡 생산에 이용되었다.⁷⁹⁾ 그의 남부 지배기 사이공 주변에 있던 3개의 둔전 병사 수가 8천-9천이었다니⁸⁰⁾ 당시 둔전 1개의 규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85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부에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둔전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둔전 설치가 새롭게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1840년 말부터 시작되어 1847년까지 이어진 남부에서의 소수민족 반란의 결과로 둔전병은 물론이고 각처의 농민들이 흩어지자 이들을 다시 모으기 위함이었다. 이 즈음 한 지방 관리에 의하면 남부에서는 人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虛籍이 2만에 이른다”⁸¹⁾고 했으니 표류하는 사람들을 모아 한 곳에 정착시키는 일이 조정으로서의 얼마나 심각한 과제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이 시기의 둔전이 이전과는 달리 사적 요소가 크게 강화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둔전이란 사실에 주목한다. 작업을 주도했던 南圻經略使 응우옌 쩌 프엉(Nguyen Tri Phuong 阮知方)의 구상을 유의해 살

78) 『大南寔錄正編第一紀』, 1848,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東京, 1968, 5:6.

79) 이 외에 크메르인들 중 일부를 묶어 둔전 형태로 관리한 적도 있고(『大南寔錄正編第一紀』, 41:21), 유랑하는 무리들을 모아 둔전에 편입시키기도 했다(『大南寔錄正編第二紀』, 8:22; 147:5-6). 심지어 중국인 해적(淸匪) 포로를 둔전에 집어 넣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大南寔錄正編第三紀』, 1894,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東京, 1977, 24:20) 둔전의 구성 요인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예외적인 경우였지 보편적인 것은 군인이나 범법자가 둔전민이 되는 형태였다.

80) 『大南寔錄正編第二紀』, 60:16.

81) 『大南寔錄正編第四紀』, 10:33b.

펴보면, 새로운 둔전은 둔전 경영의 교과서적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었다. 캄보디아와의 접경 지대인 안 장 성과 하 띠엔(Ha Tien 河僊) 성에서 시작된 이 둔전은 군인이나 죄수가 아니라 “민간인들을 모아 둔전을 만드는(募民屯田)” 형태로서, 성인 남자 50명 (및 가족)을 묶어 1개 隊로 하여, 병사 징집(揀兵)은 면해주고 평상시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는 방위 업무에 임한다는 형태였다.⁸²⁾ 새로운 둔전의 구성 성분이 민간인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둔전의 운영은 관리와 경영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기야 조정에서는 둔전의 운영까지 민간인에게 맡겨버리는 방식을 강구하게 된다. 응우옌 쯔 프엉이 내어놓은 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50인을 모아서 1隊를 만들고, 500인을 모아서 1축를 만드는데 1대를 만드는 자는 隊長으로 삼고 7품의 품계를 내리며 1기를 만든 자는 該奇로 삼아 6품의 품계를 내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 둔전이 안정되면 1대는 1邑으로 하고 1기는 總으로 전환하여 대장과 해충을 각각 읍장과 총장으로 삼는다고 했다. 군사적 기능이 필요한 곳은 둔전을 설치하지만 군사적 중요성이 별로 없는 곳에서는 둔전 설치의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立邑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30인 이상을 모은 자는 평생 身稅를 면제하고, 50인 이상을 모은 자는 9품 백호의 직을 내리며 1백인 이상을 모은 자는 8품 백호를 내려 해당 촌락을 관할하게 한다는 방침도 아울러 정해졌다. 물론 이런 지침은 남부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1853년의 일이었다.⁸³⁾

둔전이 되었던 입읍이 되었던 인력을 모으고 경영을 하자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터였다. 이런 작업에 과심을 갖고 비용을 감당할 사람들은 지주 밖에 없었다. 지주 전 반 피엔의 장남 전 반 흑과 셋째 아들의 이름 앞에 보이는 직책 백호란 바로 이런 입읍에 대한 공로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책인 것으로 보인다. 현 사이공 부근 고 범(Go Vap) 지역에 있었던 지

82) 앞의 책, 9:4b-5a.

83) 앞의 책, 9:5b-7a.

주 집안 쩌엥(Truong 張) 씨의 족보⁸⁴⁾에서도 이 시기에 백호라든가 대장 등의 직책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도 역시 1850년대 민간인에 의한 둔전입읍 정책의 반영이다.

비용은 들어갈 것이나 지주 입장에서는 평생 신세를 면제 받고 또 다른 특혜들을 가능하게 할 관작까지 부여받는 이점이 있었다. 비용을 줄이는 편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소작인의 내력은 결국 유산민이니 그들의 명단과 (허위라도) 경작지를 합친다면 조정에서 정한 기준에 얼마든지 꿰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보고 체계 내에 있는 관료들과 적절한 타협은 필요했을 터이지만 말이다. 농민 입장에서는 병역 면제를 공식적으로 보장받고 안전한 울타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했으니 양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 바로 1850년대의 둔전입읍이었다.

그런데 이를 생산 관계의 측면에서 보자면, 1850년대의 둔전입읍이란 결국 토지 개간과 생산 농민 통제가 완전히 사영화 된 것을 의미한다. 19세기 전반 동안 남부의 농업 경영은 국가 경영(둔전)과 민영 두 가지를 축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 때를 즈음하여 농업 경영이 완전히 민영화 된 것이다. 단지 이들 지주는 둔전/입읍에 대한 ‘공헌’의 대가로 중앙 조정과 연결되는 위계질서 속으로 편입되었음은 특이하다.

프랑스군이 1859년부터 남부로 들어 왔을 때 남부의 지주들이 저항에 참여하거나 항전군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는데도 지주층의 활동이 1850년대 들어서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관련된 위계질서 속에 위치하게 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전 반 혹은 항불군을 지원했으며 이 집안은 유명한 항불 투쟁 지도자 응우옌 호우 후언(Nguyen Huu Huan)이나 보 주이 즈엥(Vo Duy Duong)과 혼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⁸⁵⁾ 1876년에 작성된 이 지주의 유언장에는 “원래 있던 사당과 계기

84) 『張嘉祠堂世譜全集』, 1886, Vien Han Nom A 3186, Hanoi.

85) 전 반 혹은 응우옌 호우 후언과 사돈이다. 흑의 장남 전 반 타인(Tran Van Thanh 陳文盛)은 후언의 딸 응우옌 티 통(Nguyen Thi Thong)과 혼인했다. 또한 그의 딸은 보 주이 즈엥과 혼인했다. Nguyen Huu Hieu, *Vo Duy Duong voi Cuoc Khang Chien Dong Thap Muoi* (동 탐 르어이에서의 항전과 보 주이 즈엥), Nxb Tong

물용 등은 모두 서양인에 의해 불타버렸다”고 하니 전쟁의 피해는 이 집에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인에 의해 불타버렸다”라는 표현은 한 지주 집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시되던 사당 및 제례와 관련된 온갖 기물들이 손상된 데 대한 참담함과 서양인에 대한 적대감을 무엇보다도 강하게 웅변하고 (적어도 집안 사람들에게) 있다.

응우옌 폭 응이엵이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지주인 고 쩡(Go Cong)의 즈엉 티 호영(Duong Thi Huong) 역시 쩌 반 흑과 자취가 유사하다. 무남독녀 의동딸이었던 그녀는 재산을 어머니 쩌 티 싸인(Tran Thi Sanh)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쩌 티 싸인은 훗날 항불 지도자가 되는 쩌엉 딘이 둔 전입읍하는 것에 실질적 재정 지원자였고 쩌엉 딘에게 재가했던 여성이다.⁸⁶⁾ 말하자면 즈엉 티 호영은 쩌엉 딘의 양녀가 되는 셈이었다. 간접적이거나 19세기 중반 지주의 둔전입읍과 관련을 갖는 이 여성은 또다른 형태로의 저항의식을 표현한다. 응우옌 폭 응이엵에 의하면 프랑스 지배가 시작된 이후 살아남은 이 지주가 매입한 토지 중에는 후인 반 떤(Huynh Van Tan) 소유 약 250무가 있다고 한다. 출신 성분은 확실하지 않은 후인 반 떤은 프랑스 군대에서 활동하면서 쩌엉 딘을 참살한 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남부의 반불 항쟁 진압에 대한 공으로 이 토지를 프랑스로부터 하사받은 것이었는데 일부는 반불 투쟁에 참가했다가 파산한 지주들의 것이기도 했다. 즈엉 티 호영이 이 신지주 후인 반 떤의 토지를 매입해 버린 행동이 고 쩡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양부 쩌엉 딘을 위한 복수로 인식되기도 한다.⁸⁷⁾

Hop Dong Thap, Dong Thap Province, 1992, pp.66-67.

86) Choi, 앞의 책, p.196; Nguyen Phuc Nghiep, 앞의 글. pp.48-49.

87) Nguyen Phuc Nghiep, 앞의 글. pp.48-49; 50.

맺음말

19세기 메콩 유역의 지주는 이주, 정착, 개간, 경작 등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온 변경지대의 평범한 농민으로부터 출발한다. 세습적 권력이나 관직과 연결되는 대토지 소유 내지는 겸병 또는 집적으로 형성된 지주가 아닌, 신세계에서 빈손으로부터 성장한 농민이 도달한 사회 경제적 지위였다. 그들은 관직에의 투자보다는 땅에 대한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19세기에 증대하고 있던 국내외의 쌀 수요에 대응하면서 생산을 늘리기 위해 토지를 집적해 갔다.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쩐 씨 집안의 유언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집적 방식을 찾아낼 수 있었다. 상속이라든가 불법적 겸병, 공전의 탈취, 또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토지 하사 등은 대토지 형성의 주요 요소가 아니었다. 상속의 지분은 미미하며 주로 집적은 개간 및 증여, 매매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매매를 통한 집적은 현저한데, 이는 당시 국내외에서 발전하고 있던 미곡의 유통 및 그에 따른 화폐 경제의 발전과 상관이 있었다. 1836년 조정에서 탁전을 실시하여 토지 단위가 통일되며, 공전 창출 시도가 실질적으로 포기되고 대신 ‘경작할 수 있는 한은’ 얼마든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됨으로서 매매를 통한 집적은 더욱 활발해졌다. 토지의 소유 범위가 타 촌락들로 확대되는 것도 이 즈음부터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주는 대단히 합리적(rational)이다. 그는 대단히 많은 양의 토지를 은닉하여 국가에 낼 세금을 피하고 있었고, 집적 과정에서 향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적당하게 이용했을 혐의도 짙다. 집안 제사를 위한 향화전은 절대 분배 불가를 천명하여 장남에게 상속시킴으로써 가문을 안정되게 유지하려는 수단을 마련하는 외에 장남에게는 이른 나이부터 토지를 증여하여 독립적인 집적을 종용한다. 장남의 경제력이 안정되고 향상되는 만큼 자신을 비롯한 조상들을 위한 향화전은 늘어날 것이고 받을 제사는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작인과의 관계에서 지주의 합리성은 더 빛을 발한다. 소작인은 지주의 땅을 경작해 줄 소중한 자원이다. 하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소작인을 잡아 두고 새롭게 마을로 흘러들어 오는 유랑 농민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소작료는 적절한 수준이어야 했다. 일방적인 착취는 엄두도 못 낸다. 소작인들을 쥐어짜는 것보다는 더 많은 땅을 놀리지 않고 경작하는 것이 수지맞는 일이었다. 소작인의 입장에서조차 지주의 땅은 ‘생존선(subsistence level)’을 보장하는 절실한 터전이라기보다는 특정 시기 특정 조건에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안전한 保護區였을 뿐이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하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지 지주의 자비만을 기대하며 사는 곳은 아니었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촌락은 도덕 경제가 지배하는 이상향도 아니었고, 지주와 소작인 양자의 이기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긴장된 공간도 아니었다. 지주-소작의 관계는 상호 이해관계에 따른 느슨한 계약 관계였을 뿐이다. 그 관계 속에서 소작인도 잉여를 창출하면서 팝킨의 말마따나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자도 그렇게 될 수 있는(the rich get richer but so did the poor)”⁸⁸⁾여지를 갖고 있었다. 시장 경제와의 연결은 소작인으로 하여금 지주에게 덜 의존적이게 만들었다. 남성 지주가 토지에 대해 절대권을 갖지 못하고 부인과 토지에 대한 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소작인에 대해서 지주가 가부장적 절대 권위를 갖게 됨을 완화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1850년대의 ‘둔전입읍’이란 상기한 생산 관계 속에서 토지를 집적하며 성장하고 있던 지주층의 역할이 공적 영역에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하며 결국 남부 사회에서 토지 경영의 민영화가 완성된 것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민영화는 지주의 공적 지위 획득과 연계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토지 경영은 완전 민영화 되는 대신 지주는 국가 권력의 대리인으로 전환되는 현상인데 바로 이것이 19세기 중반 남부 배트남 사회에서 출현한 특수한 면모였다.

88) Popkin, 앞의 책, p.141.

본 연구와 관련해서 쩐 씨 집안의 행적은 식민지 이전 시대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프랑스의 침입을 맞아서 많은 지주가 항전에 참여했다가 살해당하고 집안 전체가 파산한 예는 부지기수이다. 19세기 중반의 지주상에는 당연히 이런 지주들이 먼저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이 쩐 씨 집안의 경우처럼 간신히 프랑스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적절하게 타협하며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속된 경우는 또 다른 지주상의 유형을 제공한다. 이 유형의 지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파산을 면하고 생존하여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화는 불가피했다. 응우옌 푹 응이엵의 지적대로 쩐 반 흑이나 즈엉 티 호영 같은 지주들은 주변의 파산한 지주나 소농들의 토지를 계속 집적했을 수도 있었으니 예를 들어 즈엉 티 호영이 상속한 토지는 약 240무였는데 1865년 이후 그녀가 구입한 토지는 약 2,200무였다고 한다.⁸⁹⁾ 이 과정에서 프랑스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쩐 반 흑이 곤경에 빠진 셋째 딸(응우옌 호우 후언의 아내)을 구하기 위해서 1869년 쓴 다음과 같은 편지에서 전통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실권을 장악한 프랑스와는 적절한 타협을 모색하는 그의 고뇌가 잘 나타나 있다. 현재 사이공의 제 2문서관리소에 소장되어 있는 이 편지는 빈 까익 촌이 속해 있는 미토 지역을 담당하는 프랑스 관리에게 보내는 것이었으나 그는 편지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조정의 이부 상서를 수신인으로 쓰고 있다.

이부 상서께 제 딸의 죄를 자복합니다. 제 이름은 쩐 반 흑으로 [...] 작년에 千戶 즈엉 [보 주이 즈엉]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제 딸 방[Tran Thi Vang]을 위협하여 아내로 삼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후 즈엉은 도망치다 죽고 제 딸도 역시 두려워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올 해 제가 탐 비엔[tham bien 參辨, *베트남인 이 프랑스인 관할 책임관을 부르던 명칭]에게 자수하고 생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딸과, 그 아이가 즈엉과 살면서 낳은 딸을 건사했는데 죄가 될까 두려워 대관께 죄를 실도합니다. 크신

89) Nguyen Phuc Ngiep, 앞의 글, p.49.

아랑으로 저에게 두 모녀가 생업으로 돌아오고 저로 하여금 그 아
이들을 한 집에서 살게 해주신다면 무한한 은혜로 알겠습니다.⁹⁰⁾

이미 1862년과 1863년에 거쳐 프랑스 점령군 측은 남부에서 모든 토지를 정부에 등록할 것을 지시했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당연히 몰수되어 친불 협력자들에게 불하되었다. 대불항쟁에 참여했다가 도피한 자들이 토지를 등록한다는 것은 곧 자수를 의미하고 처벌까지 감수하는 것이었으니 많은 이들은 토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쩌 반 혹은 티 즈엉 티 흐엉이 매입한 토지 중에는 이들이 남기고 간 토지들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단지 이 조치들로 인해서 적어도 쩌 반 혹은 모든 토지를 등록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쩌 반 피엔의 유언장과는 달리 쩌 반 혹은의 유언장에는 대부분의 토지가 ‘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당연히 세금이 물려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전 시대와는 달리 지주의 토지 대부분이 국가에 노출됨으로서 세금 부담은 증가될 터인데 그 손실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보전할 것인가가 흥미롭다. 시장 경제와의 본격적인 접촉 및 근대적 생활 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각종의 지출(소비재나 신농구 구입, 새로운 형태의 주택 마련, 유학을 포함하는 교육비 등등)도 증가될 것이다. 쩌 반 혹은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까지는 소작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껏 전통의 관례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의 총 소유 토지 438무에서 거두어들이는 소작료가 6,000자로서 평균 약 13.7자였으니⁹¹⁾ 아버지의 유언장에 나타나는 평균 소작료 11.9자보다 상승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 게다가, 지주가 대납하던 소작인이 납부하던 간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신세의 부담도 이 지주 집안의 소작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족보에는 이 집안의 계승자들이 촌락의 지배자로 남아 있고 일부는 식민지 관료가 되는 모습도 보이지만 식민 시대 이 집안의 면모 내지는 평

90) Nguyen Huu Hieu, 앞의 책, pp.65-66에서 재인용.

91) 陳文學 부부 유언장.

판에 대한 것은 본고에서 다루는 주제의 시간적 하한선을 너무 넘어가는 것이니 여기서 끝내기로 한다.

(논문투고일자: 2004. 8. 7, 논문심사완료: 2004. 8. 27)

主題語 : 남부베트남, 남부지주, 소작, 둔전, 도덕경제, 합리적 농민

關鍵詞 : 南部越南, 南部地主, 小作, 屯田, 道德經濟, 合理的農民

Key word: southern Vietnam, southern landlord, tenant, military plantation,
moral economy, rational peasants

The 19th Century Landlords of the Southern Vietnam With
an Example of the Tran Family in Binh Cach Village of
the Dinh Tuong Province

Choi Byung-Wook

This article aims at constructing a realistic and concrete image of the southern Vietnamese landlord.

By the various politicians and scholars, the image of southern landlords has been shaped by the political purposes and by the methodological theories rather than by the serious study based on the solid materials.

The political purposes have been managed by the revolutionary and nationalist groups who have agreed, though unintentionally, on the point that the pre-colonial landlords should be labelled reactionary or backward. And the methodological theories have been applied by the scholars who tried to use the pre-colonial peasant society as the background of the nature of the peasant society during the colonial period. Well known main themes are 'Moral Economy' and 'Rational Peasants.' To be used to prove either theme, both the pre-colonial peasants and landlords should be claimed as the beings of 'moral' or 'rational' without enough evidence.

By the careful study on the recently found documents such as 'The Will of Tran Van Phien Couple (1857),' 'The Will of Tran Van Hoc Couple (1876)', and 'The Land Trade Bills' of southern Vietnam, this article challenges to illuminate several points of the southern past of the landlords in the context of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southern society

before the French presence. In addition, this article has the goal to confirm the traditional peasant society of the 19th century was neither of moral economy nor of the rational peasants.

Four issues are discussed in this article. First is the way of settlement. In contrast to other previous works on this kind of issue, author's emphasis goes to the fact that a southern landlord's origin was a poor peasant, and the 19th century southern landlords were aware of their roots as the immigrant peasants, thus their identity was more closer to the peasant class than to the privileged ruling class. Southern landlords were more interested in investing their surplus into land rather than into official career. This is an important aspect of southern landlords considering that the existence of the 19th century landlords in other regions, north and center, was related to the official status, power, and wealth.

Various ways of land accumulation of southern landlord are discussed in the second chapter. Not only the legal ways such as trade, clearance, and inheritance, but also the hiding land, bribing officials, and purchasing the land by the small children's names to get more land were used. What encouraged the landlords to accumulate land was the desire to increase the rice product. Landlords were strongly market oriented. Southern rice was connected to the international traders who were linking the southern landlords to the international markets.

Next discussion is about the landlord-tenant relation. The reality in the relation of the landlords to their tenants informs us of the broader prospective on the nature of the peasant society of the southern Vietnam. The relation was 'rational' rather than 'moral' form the points of both sides, landlord and tenant. But it was not based on the tension or potential conflict as the vindicators of the rational peasants theme claim. It

was rational due to a mutual demand. Landlords needed manpower, while the tenant needed a safe shelter. Exploitation from the landlords could not be attempted because the tenants were well prepared to leave to another place whenever they felt the condition was not good enough. From the point of the landlord, tenant was not the object of exploitation but the precious manpower to increase his rice product. Tenant, in turn, regarded landlord as the protector as long as the condition was acceptable. Consequence was the compromise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and the co-existence of the both. Based on this relation, at any rate, landlord class was gradually growing as a dominating element over the southern society as a whole before the French presence.

The final issue is the appearance of the new concept of the military plantation or *don dien* from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During the 1850s, the Nguyen government launched an active policy to establish military plantations over southern Vietnam in a large scale. Typical military plantation is supposed to be run by government with the manpower of soldiers or convicts in some cases. However, the author pays a strong attention to the point that the task of opening the military plantation was totally entrusted to the southern landlord class at this time. The manpower was not soldiers or convicts, but peasants who were either floating or working as the tenant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landlords. More important, southern landlord was to be in charge of the new military plantation with the government rank and title. It was the privatization of the government plantation in particular, and the privatization of the agricultural management in southern land in general. It should be regarded as the Vietnamese own experimentation of the 19th century based on the specific nature of the southern landlords.